

대통령령 제 호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5112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
중 “2년까지”를 “4년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